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7. 28.(수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	
<b>담당 부서</b>	국토교통부	교통안전 정책과	• 과장 강성습, 사무관 장상준, 주무관 안규빈 • ☎ (044) 201-3867, 3866	
		자동차 보험팀	• 팀장 김기훈, 사무관 임승규, 주무관 박초롱 • ☎ (044) 201-4761, 4870	
	금융감독원	보험감독국	• 국장 양해환, 팀장 정영락 • ☎ (02) 3145-7460, 7471	
	보험개발원	자동차 보험팀	• 부문장 유지호, 팀장 정태운 • ☎ (02) 368-4292, 4277	
<b>보도일시</b>		2021년 7월 2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7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스쿨존·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

-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% 할증 -
-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, 금융감독원(원장 직무대행 김근익) 및 보험개발원(원장 강호)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\* 일환으로,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(도로교통법)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.

\*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('21.3 발표, 관계부처 합동)

-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('16년 4,292명 → '20년 3,081명)에 있으나, '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%(1,093명)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(약 20%)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.
- 특히, 보행 사망자의 22%(지난 3년)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, 어린이 사망자의 66%, 고령자 사망자의 56%가 어린이·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.

### < 사례 : 횡단보도 사망 사고 >

- ▶ '21년 5월 00시에서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,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망케 함
- ▶ '21년 3월 00시 스쿨존에서 C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양을 치어 사망케 함

□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(도로교통법) 준수를 통해 보행자(어린이·고령자·일반 등)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,

○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/h 이하로 주행\*해야 하며,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.

\* 지자체별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이(지역별 제한속도 준수)

□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\*는 무면허·음주·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%, 신호·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%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,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.

\* 참조순보험요율표(보험개발원, '20년) ⇨ 보험회사 보험료 산정 시 참고

□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>

- ▶ (5% 할증)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(20km/h 초과) 1회 위반  
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~3회 위반
- ▶ (10% 할증)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(20km/h 초과) 2회 이상 위반  
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

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, “1회 위반 시 보험료 5%”, “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%”가 할증되며,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
-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.

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,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“2~3회 위반 시 보험료 5%”, “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%”가 할증되며,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.

□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%까지 적용될 예정이며,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.

\* 예: (현행) 보험료 82만원 →

(개정) 보험료 90만원(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 + 보행자 보호 2회 위반)

\*\*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□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“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,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.”라고 강조하며,

○ “적극적인 법·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,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 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장상준 사무관(☎ 044-201-3867), 자동차보험팀 임승규 사무관(☎ 044-201-4761), 금융감독원 정영락 팀장(☎ 02- 3145-7471), 보험개발원 정태윤 팀장(☎ 02-368-427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

##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

구 분		적용대상 법규위반(도로교통법)	참조
할증그룹	1그룹	무면허운전, 뺑소니	20%
		음주운전 1회	10%
		음주운전 2회 이상	20%
	2그룹	4-1. 신호지시준수의무(법 제5조), 중앙선우측통행(법 제13조 제3항), 속도제한(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), <b>보행자보호 준수 의무 위반(법 제27조)</b> 을 항목구분없이 2회~3회 또는 <b>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/h 초과 속도위반 1회</b>	5%
4-2. 신호지시준수의무(법 제5조), 중앙선우측통행(법 제13조 제3항), 속도제한(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), <b>보행자보호 준수 의무 위반(법 제 27조)</b> 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<b>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/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</b>	10%		
기본그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호지시준수의무, 중앙선우측통행, 속도제한, <b>보행자보호(법 제27조)</b> 항목 구분 없이 1회(<b>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/h 이내 속도위반 포함</b>)</li> <li>통행구분(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)</li> <li>차로에 따른 통행(법 제14조)</li> <li>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(법 제15조 제3항)</li> <li>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(법 제19조)</li> <li>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(법 제21조, 제22조)</li> <li>철길건널목 통과방법(법 제24조)</li> <li><b>8. 보행자보호(법 제27조)</b></li> <li>승객추락방지(법 제39조 제3항)</li> <li>안전운전의무(법 제48조 제1항)</li> <li>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(법 제49조 제1항 제5호)</li> <li>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(법 제51조)</li> <li>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(법 제53조)</li> <li>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·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(법 제60조 제1항, 제60조 제2항, 제61조 제2항)</li> <li>운전면허증 제시(법 제92조 제2항)</li> <li>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(면허의 취소·정지)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</li> <li>정차·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(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, 법 제35조 제1항)</li> <li>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(법 제49조 제1항 제10호),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(법 제49조 제1항 제11호),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(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)</li> <li>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(법 제68조 제3항 제5호)</li> </ol>	0%	
할인그룹	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	△ α%	